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5. 2. 25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5. 2. 15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5. 2. 20

다. 상 정 일 자 : 제 40회 사하구의회 (임시회)

제 1 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5. 2. 24)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시민과장 감명중)

가. 제안이유

- 제증명민원 발급시 민원서류의 인증, 수입증지 첨부,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「복합인증기」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음
- 최근 동사무소 「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」의 관리소홀로 직인의 도용으로 증명민원의 허위발급과 직인의 분실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공인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사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구 본청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실 전용공인을 각인 하여 복합인증기에 부착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 대행자를 지정
 - ☐ 동사무장 유고시 ▷ 민원주임
 - ☐ 민원주임 유고시 ▷ 총무주임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

- 「복합인증기」는 각종 증명 민원발급에 따른 민원서류의 인증,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수입증지 인쇄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
- 이 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인담당자의 지정 및 인계인수자를 지정함으로써 공인관리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의결